

의안 번호	204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2. 7.(수) 박경흠 의원 외 5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12. 7.(수)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12. 15.(목)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중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2조제2항, 별표)
  - 2023년: 2,424,300원
  - 2024년~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5.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월정수당이 일정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매년 보수 인상률만큼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  
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에 별표를 신설하여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  
로 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  
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